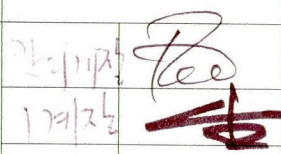


# 문화재관리국

우 100-120 서울 중구 정동 5-1 / 전화 (02) 318-7459 / 전송 (02) 776-4794 / 담당 이종희  
(02)318-4700 구내 407

문서번호 기념 86743-1993  
시행일자 1997. 6. 19. ( )

수신 서울특별시장  
참조 문화재과장

선결	고지		지시	
접	일자	'97. 6. 19. 1997. 6. 19.	결재	
	시간	:		
수	번호	636	공람	
처리과				
담당자				

제목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(사직단 및 함춘원지 보수)

1. 문재 86700-453('97. 5.21) 및 -454('97. 5.21)와 관련됩니다.
2. 귀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1호 사직단 및 제237호 함춘원지 보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  -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(권한의 위임)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중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바, 신청하신 사직단의 홍살문 보수 및 단청과 함춘원지의 함춘문 보수, 철책 정리는 위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허가 등 조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- 다만, 우리국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,
    - 함춘문 보수와 관련하여 우장막 덮기는 우기 대비 및 목재보호를 위하여 가설덧집으로 설치하고, 단청공사는 기존의 문양모사도를 작성하여 그에 의거 시행하며, 목재 및 기와 신재보충은 해체 전후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교체범위를 판단 시공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    - 아울러, 내역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검토하고, 본 공사의 감독관은 시행청 기술직 공무원을 상주감독관으로 임명.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. 끝.

문화재관리국

